

2021 국제스포츠인재양성 차세대 임원양성과정 교육생 모집공고

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제스포츠무대에서 활동할 인재육성을 위해 국제스포츠인재양성 차세대 임원과정의 교육생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
I 과정개요

- (교육목적) 개인맞춤형 역량개발 교육을 통한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지원
- (교육대상)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희망자
- (모집인원) 총 3명 내외 (추가모집)
 - * 총 교육인원은 12명 내외로, 기존 대한(장애인)체육회 추천자 대상 별도 선발전형 진행
- (교육일정) '21. 9. 6(월) ~ 12. 18(금)/ 교육생별 희망시간 및 장소
- (교육구성) 영어, 전문역량, 워크숍 / 총 108시간 이내
 - 영어/전문역량 : 개별 맞춤형 교육/ 주 2-3회, 교육생 희망시간 및 장소
 - 워크숍 : 오프라인 집합교육/ 토 13-17시(2회), 캐럿글로벌 한남센터 등
- (수료기준) 출석률 70% 이상

II 교육내용

구 분	주요내용	교육기관
영 어 (60H)	○ 1:1 영어회화, 스포츠 및 비즈니스영어, 영어토론법 및 영어스피치 기술 등	캐럿 글로벌
전문 역량 (40H)	○ 자기PR : 개인별 코칭을 통한 이력서/PT 작성실습 및 출마연설 첨삭(촬영/분석/피드백), 미디어트레이닝 등 선거캠페인 전략 수립 ○ 직무전문성 : 데이터분석, 미디어커뮤니케이션, 스포츠개발, 스포츠비즈니스관리, 스포츠이벤트관리, 반도핑 ○ 글로벌 네트워킹 : 마인드세팅, 비즈니스매너, SNS활용 등	
워크숍 (8H)	○ 국제기구 진출자 초청특강(同사업 수료자 중 진출자 등) ○ 교육생별 국제기구 진출전략 개인PT 등 발표	

* 상기 교육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

III 교육생 모집

- 신청기간 : 8. 3(화) ~ 8. 13(금) 17:00까지
- 신청방법 : K스포에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(<https://edu.kspo.or.kr>)

회원가입/로그인 → 정규과정(오프라인과정) → 차세대임원양성과정 → 온라인 신청접수

□ 자격요건

[필수]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희망자로서, 아래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

- 국제경기연맹(IF), 아시아경기연맹(AF) 등 국제경기연맹 전·현직 임원 및 분과위원
- 국내경기연맹(NF) 임원 및 분과위원 (종목 사무처장이 임원, 분과위원 겸직인 경우 포함)
* 대한체육회 산하 정회원·준회원 종목단체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·준가맹단체 기준

○ 우대사항

- 국제스포츠인재양성사업 교육과정 수료자

○ 제한사항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 * 【별첨】 참조
- 동일 교육과정 수료자는 교육참여 제한

□ 제출서류

- [필수] 국제스포츠기구 차세대 임원과정 지원서 * 【붙임】 양식 활용
- [필수] 회원종목단체장 교육생 추천 공문
* 공문 상 상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추천자의 경력·기간 등 기재요망
- [선택] 국제스포츠인재양성 교육과정 수료증 * 우대사항 해당자 제출

※ 제출서류 미제출시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기재 내용 불인정

※ 제출서류는 스캔본 파일(PDF)로 첨부 요망(사진, 화면 캡처 또는 화면출력 등 인정 불가)

IV 교육생 선발

□ 선발절차

- 서류심사(1차)
 -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지원서 등 검토(불성실 작성 시 불합격)
- 면접심사(2차) *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
 - 교육과정 지원 동기 및 향후 활동계획 위주로 개별 면접 실시
 - * 지원동기, 활동경력, 어학능력, 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

□ 추진일정

- 서류합격자 발표 : 8. 18(수), 개별 통보 및 안내 예정
- 면접심사 : 8. 23(월) 오후, SPORTS 360 LAB (올림픽공원 내)
- 최종합격자 발표 : 8월 25(수), 개별 통보 및 안내 예정
- * 면접시간은 추후 안내 예정,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V 기타사항

□ 교육운영 관련 안내사항

-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방역지침에 따라 교육장 관리 및 교육 운영
 - 교육장 주기적 소독·방역 예정
 - 방역지침 및 개인 감염 예방수칙 준수
 - 교육과정 중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개인위생 관리 철저
 - 출석 전 자가진단 후, 유증상시 사전 통보 필수
 - *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시 출결 인정(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)
- 교육생 등 확진자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, 교육일정 조정 및 비대면 교육 전환 가능

□ 유의사항

- 지원서 등 제출서류는 반환 하지 아니하며, 접수 완료 확인 필수
- 지원서 내용 허위 기재, 누락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등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- 관련문의 : 캐럿글로벌 교육운영팀 (070-7418-5375)

【별첨】

<국가공무원법 제 33조>

(개정 2010. 3. 22., 2013. 8. 6., 2015. 12. 24., 2018. 10. 16., 2021. 1. 12.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*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해당자는 해당 교육과정 선발 제한

** 추후 허위사실 등 발견 시 교육과정 참여 제한 및 수료 불인정